

제320회 임시회
2013.05.15.(수)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05.15(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광희 의원 외 6인

나. 발의일자 : 2013년 04월 26일

다. 회부일자 : 2013년 05월 01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05월 08일

(제3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유인물로 대체)

가. 제안이유

충북 도내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형평성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통하여 교원의 교육활동과 지방공무원의 교육지원행정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의 효

울성을 높이고 업무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13조, 신설).

3. 검토보고 요지

(검토보고 : 유인물로 대체)

-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인 교원과의 불균형한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같은 직장 내 구성원간 형평성 있는 근무환경을 통하여 협력관계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학교의 장이 학교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증진과 사기진작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간의 조화로운 관계 형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효과적인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위임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나, <표1>과 같이 현재 9개 타·시도에서 동 조례가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표1>전국 시·도 교육청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교원과 근무시간 동일) 개정 현황

지역	조례 내용 발췌	개정일자
광주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제13조>	2012.02.12.
강원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제14조>	2012.03.30.
서울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제13조의2>	2012.05.17.
인천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제14조의2>	2012.06.11.
대구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제12조의2>	2012.10.02.
경기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제15조>	2012.10.05.
충남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제14조>	2012.10.30.
전북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2013.04.19.
전남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2013.04.3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를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각급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 제12조(생략) <u><신설></u></p>	<p>제1조 ~ 제12조(현행과 같음) <u>제1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각급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u> <u>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u></p>
<p><u>제13조(생략)</u> <u>제14조(생략)</u> <u>제15조(생략)</u> <u>제16조(생략)</u> <u>제17조(생략)</u> <u>제18조(생략)</u> <u>제19조(생략)</u> <u>제20조(생략)</u> <u>제21조(생략)</u></p>	<p><u>제14조(현행 제13조와 같음)</u> <u>제15조(현행 제14조와 같음)</u> <u>제16조(현행 제15조와 같음)</u> <u>제17조(현행 제16조와 같음)</u> <u>제18조(현행 제17조와 같음)</u> <u>제19조(현행 제18조와 같음)</u> <u>제20조(현행 제19조와 같음)</u> <u>제21조(현행 제20조와 같음)</u> <u>제22조(현행 제21조와 같음)</u></p>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1. 8. 24] [법률 제10700호, 2011. 5. 23, 일부개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1. 9. 29] [대통령령 제23165호, 2011. 9. 29. 타법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1. 8. 24] [대통령령 제23015호, 2011. 7. 4, 타법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